

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

1. 보고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(2차)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내역의 각 회계별 세입·세출 변동에 따른 예수금·예탁금 변경 반영

나. 운용규모 : 1,514,788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11,662백만원 감소)

〈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〉

(단위: 백만원)

〈 수입계획 〉			
구 분	1차변경 (A)	2차변경 (B)	증 감 (B-A)
계	1,526,450	1,514,788	△11,662
용자금 원리금회수	16,172	16,172	-
예수금	1,354,873	1,343,211	△11,662
예탁금 원금회수	13,920	13,920	-
예치금회수	92,292	92,292	-
이자수입	49,193	49,193	-

〈 지출계획 〉				
구 분	1차변경 (A)	2차변경 (B)	증 감 (B-A)	
계	1,526,450	1,514,788	△11,662	
재무 활동	소 계	1,526,443	1,514,781	△11,662 (△0.8%)
	예수금 원금상환	33,650	33,650	-
	예수금 이자상환	61,360	61,360	-
	예탁금	1,291,400	1,275,735	△15,665
	예치금	140,033	144,036	4,003
행정 운영 경비	소 계	7	7	-
	기본경비	7	7	-

※ 의회의결을 받은 2024년 당초 운용계획(1,499,671백만원) 대비 2차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1.0% 증액(정책사업 기준)되어, 의회 의결 불요

○ 수입계획 변경

– 예수금 : 1,354,873백만원 → 1,343,211백만원 (△11,662백만원)

• 교통사업(특) 주차장관리계정	222,900	→	221,800	백만원(△1,100)
• 주택사업(특) 도시정비계정	527,000	→	525,300	백만원(△1,700)
• 도시개발(특)	290,400	→	282,600	백만원(△7,800)
• 소방(특) 정책사업비계정	36,600	→	35,538	백만원(△1,062)

○ 지출계획 변경

– 예탁금 : 1,291,400백만원 → 1,275,735백만원 (△15,665백만원)

• 교통(특) 교통관리계정	380,000	→	370,500	백만원(△9,500)
• 도시철도건설(특)	457,900	→	451,735	백만원(△6,165)

– 예치금 : 140,033백만원 → 144,036백만원 (증 4,003백만원)

▶ 수입·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증액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(보고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(보고)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전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※ 작 성 자 :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양해진(☎ 2133-6812)